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6.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6월 2일

나.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연직이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임직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조항 정비(안 제11조)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 삭제(안 제20조)
-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기업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 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 이 2025.1.7.부로 일부 개정됨.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법 개정과 발맞춰 우

리 구(區) 시설관리공단 직원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한 규정 정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삭제, 임원추천위원회 간사 관련 조항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함.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9조에서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만 재직기간으로 함을 명확히 하는 것과 당연직에 대한 규정을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규정 외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 안 제20조에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담당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연직 이사 조항 정비,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의 조례 명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항 삭제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먼저, 당연직 이사 조항 정비 관련하여 비상임이사가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는 당연직과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구분 없이 비상임이사를 포괄적으로 표기하고 있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여 적합성을 높이고, 소관 업무명을 기재하여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서명이 변경될 때마다 소관 국장 명칭을 개정해야 하는 점을 제거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만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장이 임면한다는 규정의 위임만 명기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있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사항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직원 채용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공단 직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

면 상위법 개정으로 추가 변경되는 결격 사유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아울러 2025.1.7.부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그간 자체인사 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지방공무원법」 과 동일하게 규정함에 따라, 중요 기반 시설 관리와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 등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를 살펴보면 위원 구성에 대하여 별도의 결격사유는 명시하지 않고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도 “임원과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만 규정할 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에 대한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33 호
----------	---------

제출연월일: 2025.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당연직이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당연직이사의 임기가 ‘재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음에 따른 문구 정비
- 영등포구 조직 개편에 따라 당연직이사의 직위에 관하여 정비

나. 임직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조항 정비(안 제11조)

-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요건을 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
- 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 삭제(안 제20조)

-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

라.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1조)

- 공단의 직제 규정 반영하여 간사의 직위를 ‘부서장’으로 현행화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4) 행정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5. 5. 1. ~ 5. 2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하며, 1년”을 “하되,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따른”을 “따른 당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원추천 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국장”을 “공단업무 총괄부서 소관 국장, 주차사업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세무,”를 “세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임원의 결격사유)”를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를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직원이 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다음”으로,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를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된 임원”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③ 공단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담당 팀장이 된다”를 “부서장으로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u>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제3항에 <u>따른</u>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u>인원추천위원회</u>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의 <u>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국장</u>은 <u>당연직</u>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u>당연직이 아닌</u> 비상임이사는 <u>관련분야 전문가</u>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p> <p>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u>세무</u>, 및 회계전문가</p> <p>2. (생략)</p> <p>④ (생략)</p> <p>제11조(<u>임원의 결격사유</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삭 제</p>	<p>제9조(이사) ① ----- ----- -- <u>하되, 1년</u>----- ----. ----- <u>따른 당연직</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인원추천위원회</u>----- ----- . ----- <u>공단업무총괄부서 소관 국장, 주차사업 부서 소관 국장</u>----- -. ----- -----.</p> <p>1. ----- ----- <u>세무</u> ----- -----</p> <p>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u>임직원의 결격사유</u>) ① ---- ----- ----- <u>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직원이 될 수</u> ----.</p>

2. ~ 5. (생략)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제21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  
-----  
-----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공단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  
-----.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  
-----  
-----.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부서장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